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2023. 04. 06.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정 · 부 학생회장 선거(이하 ‘총학생회 선거’라 한다)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과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장 선거는 해당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시행세칙이 없을 시 본 세칙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 제3조(원칙)

- ① 총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 ② 총학생회 선거는 이전 총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 ③ 총학생회 선거는 회원들이 총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 ④ 총학생회 선거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사항은 중선관위가 결정한다.
- ⑤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기구의 자치 규정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선거관련 자치규정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해당 세칙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구성원의 책임)

모든 회원은 총학생회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5조(위상)

총학생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 제6조(목적)

총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업무 및 권한)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① 총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 ② 총학생회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③ 중선관위는 각 선거운동본부와 합의한 방식 및 세칙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거운동본부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④ 중선관위는 선거 후 제10장의 업무를 끝내고 해체한다.

#### 제8조(구성)

- ① 중선관위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사퇴 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행)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중 2인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회 중 2인 임명 시 중선관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중앙집행위원회 2인은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은 당해 총학생회장으로, 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부중선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③ 중앙비상대책위원회로 이루어졌을 경우 중선관위원장은 중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중선관위원장은 부중앙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다.
- ④ 중앙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을 시 중선관위원장과 부중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의결권을 하나만 가진다.

#### 제8조의 2(위원의 해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 회칙,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선거에 입후보할 때
  3. 본 회 회원이 아닐 때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장에 한정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중선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 위원 2/3이상 동의하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 의결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임은 재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직 총수에서도 제한다.
- ⑥ 부결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의 신분은 유지된다.

#### 제9조(소집, 개최 및 의결)

- ① 중선관위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중선관위원장 또는 중선관위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해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원장 및 부중선관위원장 포함)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 ③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결은 중앙선관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단과대 및 학과(부) 선거 관리 위원회)

- ① 단과대 및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각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에서 책임진다.
- ②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 및 각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한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장 선거 유관기관

#### 제1절 학내언론

##### 제11조(범위)

학내언론은 중앙대학교에 등록된 공식 언론기구 및 독립언론기구 - 중대신문, UBS, 중앙문화, 녹지,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사 -로 범위를 규정한다.

##### 제12조(역할 및 권리)

- ① 학내언론은 선거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할 책임을 갖는다.
- ②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다음의 각 호로 규정한다. (각 호의 위배 여부는 중선관위에서 의결한다.)
  1. 학내언론에 향응을 제공한 선거운동본부에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을 경우
  2. 학내언론의 기자가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여 특정 선거운동본부에게 우호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을 경우
- ③ 학내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중선관위 및 각 선거운동본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선관위와 각 선본은 선거와 관련한 취재를 위한 학내언론의 인터뷰 요청이나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한다.

- ④ 중선관위는 학내언론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합동공청회, 공동정책간담회,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질문 우선권 부여
- ⑤ 제12조 2항에서 언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중선관위는 과반의 참석과 참석 인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해당 학내언론기구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절 선거운동본부

### 제13조(역할)

- ①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중선관위의 감독 하에 후보의 선거운동, 선전 등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 ②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세 분석, 정책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 ③ 선본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중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 ④ 선본은 모든 학우에게 차별 없이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 제14조(구성 및 자격)

- ① 각 선본은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으로 구성된다.
- ② 정·부후보는 당해 총학생회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
- ③ 선본 구성원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재적생으로 한다. 단, 학생자치기구 구성원(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구성원)은 제외한다.

### 제15조(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본장은 중선관위와의 소통에 있어서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 ②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 제16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활동에 참여한다.
- ②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 제17조(선본 구성원 신고)

- ① 각 선본은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중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번, 전공, 선본 내에서의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최초 선본 구성원 등록은 선거운동본부 현황 내역서를 통해서 하며,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중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본장이 중선관위원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한다.

③ 선본 구성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의 선본 구성원인 사람을 선본 구성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 구성원으로 신고한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 구성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단, 이중 등록자에 대해서는 양측 선본 모두에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

제18조(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및 선전을 선본 책임 하에 진행한다.
- ② 선본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중선관위에 공간의 대여를 요구할 수 있다. (선본이 선본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를 할 경우, 중선관위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③ 중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2. 중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3. 중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4.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 제3절 참관인

제20조(통칙)

- ①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선본은 투표소 당 참관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자격)

- ① 참관인은 선본원으로 한다.
- ②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와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각 투표 전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를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관인 교체는 다음 날 적용된다.
- ③ 제21조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제22조(이의 제기)

- ①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투표 진행사항에 대하여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중선관위와 타 후보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3조(규제내용)

-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 ②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중앙선관(부)위원장은 해당 참관인의 참관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해당 투표소에는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
- ③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3. 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제24조(기타 사항)

- ① 참관인들은 투표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를 기각한다.
- ②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 제기할 경우 중선관위원회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 참관인이 입회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참관인은 선거운동본부장이다.)

### 제4장 선거

#### 제25조(선거 일정)

- ① 총학생회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일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이외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중선관위에서 정한다.
- ④ 제25조 2항의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추천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후보자 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2. 추천서는 중선관위에서 추천 시작 하루 전에 배포한 추천서를 사용한다.

#### 제27조(부정선거운동)

-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금품살포
  3. 선거의 자유 방해
  4. 선전 방해: 자보 등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5.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6. 중선관위의 방해
  7. 허위 사실 유포
  8. 후보자 비방
  9.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참여
  10.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룰미팅에서 합의된 장소 이외의 모든 곳 이해당한다.)
  11.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의심행위는 중선관위의 판단하에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거나, 중선관위로의 제보가 있거나, 공론화가 된 경우 조사한다.)
  12.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의 선거운동
  13.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 ② 중선관위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후보자,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자세한 징계 기준은 제6장에 따른다.

#### 제2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학생회 집행부(국) 및 대표자, 재직 중이 아닌 자
- ② 위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중선관위는 논의를 통해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 제29조(선거운동 기간)

-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중선관위가 정한다.
- ②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 제30조(선거권)

- ① 유권자는 현재 재학 중인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 ②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 2월 졸업이 불확실한 자는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은 유권자로 인정한다.
- ③ 중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관위~~ 중선관위는 모든 선본에게 선거인 명부 요약본을 공개 할 수 있다.

④ 후보자 추천서에는 회원의 성명, 학번, 단과대, 학과(부), 서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온라인을 활용한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추천서명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1조(피선거권)

- ① 정·부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
- ② 본 회원(재학생)으로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③ 본 회원(재학생)으로부터 4개 단과대 이상 총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4개 단과대 별도로 각 50명 이상을 받아야 하며. 선본별로 복수 추천이 가능.)
- ④ 학생회 집행부(국) 및 대표자가 아닌 자로서, 후보자 모두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32조(후보자 등록)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구비하여 룰미팅 30분 전 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중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 2. 제31조 3항에 의한 추천서 (후보자 추천서에는 회원의 성명, 학번, 단과대, 학과, 서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 3. 대표 참관인, 선본원 명단과 재학 증명서 (선본원은 재학 증명서 가능)
  - 4.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 5. 후보자 사진 (포스터용 각 2매)
  - 6. 선거공탁금 50만원

### 제33조(입후보자 심사)

- ① 중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제31조에 의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자격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입후보자가 제32조 1항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제34조(사퇴규정)

- ① 학생회 집행부(국) 및 대표자 중 선거 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선관위의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선관위가 논의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사퇴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사유서 등 중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1인이 입후보로 인하여 중선관위를 사퇴할 경우 해당 단과

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위임할 수 있다.

#### 제35조(입후보자 최종 등록 : 룰미팅)

중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며, 이를 룰미팅이라고 칭한다.

① 룰미팅의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대표 참관인으로 하며, 불참 시 중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2. 선거시행세칙 검토

3.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의 사항 논의

② 룰미팅 결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한다.

③ 룰미팅 결과는 각 단과대학 건물 및 SNS,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 제36조(선거유세)

유세는 개별유세와 합동유세로 나누며 관련 제반 사항은 룰미팅에서 정한다.

#### 제37조(개별유세)

①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연설회, 옥외 연설회와 간담회로 구분한다. 단, 온라인을 활용한 경우 룰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간담회의 형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③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중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쳐 중선관위의 명의를 넣은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7조 1,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제38조(합동유세)

① 중선관위는 1회 이상의 합동유세를 개최한다. 단, 단선의 경우 룰미팅에서 합동 유세의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합동유세는 중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

③ 합동유세의 순서는 후보 등록 시 추첨하여 정한다.

④ 공고된 유세 시간 3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한 후보당 유세시간은 공연, 지지유세, 본 유세를 포함 50분 이내로 한다. (단, 유세 교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50분을 넘어서면 주의 1회를, 또 다시 5분이 지나면 경고 1회와 동시에 유세를 중단시킨다.

⑥ 타 후보자의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할 수 없다.

⑦ 각 후보자는 중선관위가 정하는 형태의 유세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⑧ 이외의 합동유세 진행은 중선관위원장이 책임진다.

⑨ 합동유세의 형식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 각 선본과 중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선거문화제와 결합하는 합동유세 등)

#### 제39조(합동 공청회)

- ① 합동 공청회는 중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 ② 후보자는 합동 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 ③ 합동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의 질의 및 응답, 참석자의 서면 질의 등으로 구성된다.
- ④ 합동 공청회의 세부사항은 룰미팅에서 결정한다.

### 제5장 이의 제기

#### 제40조(이의 제기)

-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과 대표 참관인,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본부원은 대표 참관인을 통하여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이 이를 위반하여 중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41조(이의 제기의 처리)

- 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의 처리는 중선관위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 제6장 징계

#### 제1절 총칙

#### 제42조(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중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43조(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②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45조, 46조에 의

한다.

#### 제44조(징계의 통보)

- ①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②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 ③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대자보를 통해 게시한다. (선거선전물량에 포함)
- ④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1.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대자보에 공개 (공개 사과문과 함께)
  - 2. 경고 2회 - 경고일 하루(24시간)의 개별 강의실 유세 금지, 공동유세 시 유세시간 20분 감축
  - 3.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시킨다.

#### 제2절 징계의 의결

#### 제45조(임의적 징계)

- ① 임의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경우와 기타 중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중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말한다.
- ② 임의적 징계의 결정은 중선관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

#### 제46조(필요적 징계)

- ①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은 중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2항에 제시된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② 필요적 징계를 중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각 규칙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단, “징계를 한다.” 또는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규정된 경우 중선관위의 과반수 이상 의결에 따라 중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 제47조(재심의)

- ① 대표 참관인은 경고의 징계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중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의는 기존 결정에 대해 1회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 제7장 투표

## 제1절 총칙

### 제48조(투표일과 투표시간)

- ① 투표는 이틀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표시간은 첫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 둘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이다.
- ③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투표의 시작을 정시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중선관위의 논의 및 의결로 투표시간을 당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야간에 수업이 있는 특정 학과(부)는 중선관위의 의결로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9조(투표소)

- ① 투표소는 중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② 투표소에는 중선관위 또는 해당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 제50조(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신분을 확인 하여야 투표 할 수 있다.

- ①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으로 제한한다.)
- ② 중앙대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교학지원팀이나 과사무실에서 학번대조가 가능한 자)

### 제51조(투표절차)

- ①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중선관위의 선거인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단, 온라인을 활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경우 얼굴 확인은 제외한다.
  2. 인증번호 배부
  3. 전자투표 실시
- ② 종이투표로 시행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중선관위의 선거인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용지 배부
  4. 투표
- ③ 투표절차를 진행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과대 및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은 반드시 유권자의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을 실시한다. 단, 온라인을 활용하여 투표를 진행할 경우 얼굴 확인은 제외한다.
- ④ 투표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학우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

### 제52조(투표소에서의 질서)

- ① 투표소에서는 중선관위,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 이외에 있을 수 없다.

- ②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투표소에서 선거운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단, 해당 행위자가 선본 구성원일 경우 해당 선본을 징계한다.

## 제8장 개표

### 제1절 총칙

제53조(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중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 제54조(개표장)

- ①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 ②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중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다. 후보자와 각 선본 구성원들은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 제55조(개표절차)

- ① 전자투표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인 수 공고
  2. 개표에 필요한 암호 입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암호는 중선관위원회, 전자투표시행 업체가 가지고 있다.)
  3. 개표
  4. 개표 결과 공개 및 공고
- ② 종이투표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인 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룸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6. 현황판에 기재
- ③ 개표절차에서의 질서 유지는 중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 제56조(무효투표)

- ① 기계적 오류 또는 중복투표 등 선거과정에서 생긴 무효표는 중선관위가 표처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 ② 표처리에 대한 논의 결과는 논의가 끝난 후 즉시 SNS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③ 종이투표로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중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종이투표의 경우 제56조 3항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중선관위가 결정한다.
- ⑤ 종이투표에서 발생한 무효표의 경우 무효표수와 무효표로 처리된 이유, 무효표 사진 등을 공개한다.
- ⑥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의 문제가 발생한 표에 대해서는 중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 제57조(기권투표)

- ① 기권투표는 회원의 권리로서 투표 시 보장받아야 한다.
- ② 투표용지(전자투표 및 종이투표)에는 반드시 기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권란을 만들어야 한다.
- ③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

#### 제58조(연장투표)

- ①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중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10시부터 19시까지 연장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연장투표 시,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중선관위의 논의결정으로 재선거여부를 결정한다.
- ② 야간에 수업이 있는 특정 학과(부)는 중선관위의 의결로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9조(재선거)

- ① 후보자 등록부터 시작하여 선거운동과 투표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② 제58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 재선거 일정은 중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 제60조(재투표)

- ① 시기와 시일을 연장하여 적당한 시기에 투표 행위만을 일컫는 말이다.
- ② 개표 후 선본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중선관위의 논의를 통해 이의가 수용된 경우 실시한다.
- ③ 재투표 일정은 중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단, 선거 종료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9장 당선

#### 제61조(당선의 기준)

- ① 전자투표의 경우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가 기권표보다 커야한다.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생긴 무효표는 기권표에 합산한다.)
- ② 종이투표의 경우에도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가 무효표와 기권표의 합보다 커야한다.)
- ③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투표를 실시한 선거권자의 과반의 찬성을 득표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득표 차는 기권표보다 커야 한다.

#### 제62조(당선공고)

- ①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중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 ②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 ③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단, 이의 의결은 중선관위 재적위원 1/2이상으로 한다.)
- ④ 제61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선자가 없을 경우, 중선관위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2/3의 의결로 재선거 및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 ⑤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인공고를 한다.

### 제10장 선거 정리 사업

#### 제63조(선거 정리기간)

- ① 중선관위는 개표 종료일부터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중선관위의 관리 하에 있는 물품과 자산의 정리 및 당선된 선본으로의 소유권 이전
  2. 선본이 제출했거나 중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자료의 정리.
  3. 전자 투표의 경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삭제
  4. 선거가 무산된 경우 데이터베이스 삭제
- ② 중선관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63조 1항의 업무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 제11장 선거자금 공영제도

#### 제64조(목적)

총학생회 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하며 좋은 정책을 가진 모 선

거운동비용 중 일부를 총학생회비에서 책정하는 방식이다.

#### 제65조(운영원칙)

- ① 선거자금공영제도는 해당 학기 학생회비 중 10% 이내에서 집행되며 66조에 위배되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 한하여 룰미팅을 통해 정해진 선전물 중 각 선본이 공통으로 제작하는 인쇄물의 일부(혹은 전체)를 룰미팅에 근거한 각 선본의 요구대로 중선관위에서 제작한다.
- ② 선거자금공영제도로 사용할 홍보용 인쇄물의 종류, 개수, 규격 등은 룰미팅에서 정하도록 한다.
- ③ 선거자금공영제도의 공정성 및 유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본은 공탁금 50만원씩을 중선관위에 위탁하고 당선공고와 함께 공탁금을 각 선본으로 반환한다. 단 제65조에 위배되는 선거운동본부의 경우 이 공탁금은 중선관위에 의해 해당학기 학생회비에 포함된다.
- ④ 선거자금 공영제도를 통하여 집행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거선전물과 인쇄물은 각 선본에서 자력으로 집행한다.

#### 제66조(조건) 선거자금공영제도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선본에 집행된다.

- ①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본
- ② 개표 후 총 유효득표수가 10% 이상인 선본
- ③ 선거기간 중 부정/부폐행위에 의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선본

### 부 칙

#### 제1조(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중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의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 ① 본 세칙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면 선본장 - 중선관위 연설회의(이하 연설회의)에서 해석을 확정한다.
- ② 선본과의 협의 및 선거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연설회의 목적으로 한다.
- ③ 중선관위 위원과 각 선본장(또는 선본장 대리인)을 연설회의 구성으로 한다.
- ④ 연설회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선본장은 연설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설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연설회의 개회를 요구할 시 요구한 위원이 논의안건을 정하여 요구한다.

#### 제2조(선거시행세칙의 효력발생)

본 세칙은 개정 이후 총학생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